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62
------	-----

2019. 2. 25.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11월 20일, 문영민의원(찬성의원 13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7일
- 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 2. 25)상정, 제안설명, 검토 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 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문영민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예산과 인력 등 공공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운영과 평가를 위해

「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」를 실시하고 있음.

- 동 조례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평가 및 결과 보고의 시한을 정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바, 이에 시범사업의 평가와 시민공개 시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,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범사업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함(안 제8조제3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서울시가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, 평가와 공개의 시한을 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.
- 개정안은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하는 한편,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나. 서울시 시범사업의 현황

- 서울시는 부서 재량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범사업¹⁾을 실시하고 있으며, 최근 5년간(2014년 ~2018년) ‘서울자율주행 테스트베드사업’ 등 60개의 시범사업(국비포함 625억 1,725만원)을 실시해 왔음.
- 이 중 성과가 우수한 8개 사업만이 전면 실시되거나 사업대상을 확대하였고,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시범사업을 종료하거나 추가적인 검토 등을 이유로 본 사업 추진을 보류하였음.

1) 시범사업은 ‘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·기간·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’을 의미함

<서울시 시범사업 실시 내역(2014~2018)>

(단위 : 천원)

연도	주요 시범사업명	사업수	예산액
2014	일시보육 시범사업, 주거급여개편 시범사업,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등	13건	13,110,517
2015	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,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,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 등 9개 사업	9건	3,482,435
2016	택시 심야운행활성화 시범사업,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, 대형 상수도관 세척 시범사업 등	15건	8,774,800
2017	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,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,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등	15건	6,839,500
2018	층간소음 분쟁 방지 협서함, 서울자율주행 테스트베드, 스마트팜 시설 원예 실용기술 보급 등	8건	30,310,000
계		60건	62,517,252

다. 시범사업의 공개시한 명시(안 제8조제3항).

- 개정안은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.
- 현행 조례에서는 시범사업 성과결과와 공개의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평가와 공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 되어 시범사업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.
- 일례로 “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”의 경우 평가기간이 10개월, 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”은 5개월이 소요되었음.

-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평가 5개월 소요 (보건복지부, '17.2~'17.6.)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10개월 소요 (보건복지부, '18.8.~'19.5.)
-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시범사업 평가 5개월 소요 (서울시, '18.8.~'18.12.)
- 문화영향 시범사업 평가 6개월 소요 (문화체육관광부, '14.7.~'14.12.)

- 이에 개정안과 같이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시범사업의 공개 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평가는 계량화된 평가지표 개발과 측정을 통해 진행되며,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“시범사업평가위원회”를 구성하고, 전문기관의 용역, 전문가 합동 현장평가,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.
- 이럴 경우, 시범사업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에 걸리는 기간도 각각 달라, 일률적으로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.
- 따라서, 개정안과 같이 공개 시한을 시범사업의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획일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“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”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.

<수정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가</u>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</u>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</u>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각종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신속히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, 사업완료 3개월 이내에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존재할 수 있어 공개시한을 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수정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함(안 제8조 제3항).

Ⅵ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5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각종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신속히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, 사업완료 3개월 이내에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존재할 수 있어 공개시한을 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함(안 제8조 제3항).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 량화된 평가지표에 의 한 측정을 통하여 시 범사업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 가</u> 결과를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 량화된 평가지표에 의 한 측정을 통하여 시 범사업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3개월 이 내</u> 제1항에 따른 시 범사업평가 결과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 량화된 평가지표에 의 한 측정을 통하여 시 범사업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 가 완료 후 1개월 이 내</u> 제1항에 따른 시 범사업평가 결과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가</u>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~ 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</u>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